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847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3. 11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4. 3. 11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4. 4. 28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제정이유

- 새로운 기금 설립시 별도의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행정적 낭비 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및 신설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관련 조례를 통합 단일화를 기하고
- 날로 급증하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의 용도를 각 계정별로 지정하여 세분화·전문화함(안 제4조)
- 사회복지관련 기금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하되, 별도의 계정으로 운용·관리함(안 제5조제1항)
- 기존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각각 폐지함(안 부칙 제2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새로운 기금 설립시 별도의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행정적 낭비 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 저

소득주민주녀장학기금, 생활안정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의료보호기금 및 신설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날로 증가하는 새로운 사회복지 행정수요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1조제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시·군에 설치할수 있다 로 되어있고 같은법 제41조제2항에 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사회복지관련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 강원도와 전남 여수시 등에서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였음.
- 위와같이 관련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에 미루어볼때 우리군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나
- 조례안 제4조제5호 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에서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사업자금계정,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계정으로 구분되어야 하지 않는지, 조례안 제14조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범위 이외에 장애인 단체 등의 지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지원금 회수·반환 규정등의 필요성 여부, 조례안 제21조, 제23조 내용중 용어의 적절성, 조례안 제32조제2항, 제37조제4항, 제45조 조문 내용 미정리부분, 부칙제2조, 제3조제2항의 조문 내용 미정리 부분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깊이있고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정호용의원 외 6명 수정안 제출

6. 토 론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제2장 기금의 지원 및 용자, 제3장 기금의 반환 및 상환 등
실체적 규정 통합하여 신설
- 당초 조문 구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폭축소
(당초 51조→44조)

8. 심사결과

- 2004. 4. 2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